

국무총리지시 : 2001-5호

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

국무조정실

1. 목적

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,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.

2. 기본방향

-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정부예산 절감
 - 에너지관련 정부 예산부담 최소화
 -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·관리하여 절약효과 제고
 -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절약 전담 조직 운영의 활성화
-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
 - 공공기관의 정책수행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충분히 반영
 -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의 무화

-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적극 홍보

3. 추진체계

- 국무조정실 :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
 -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
- 산업자원부 :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·보고
 -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수립·시행
 - 각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평가 및 보고
- 에너지관리공단 : 지침 이행실태 조사 및 평가업무 실무 지원
- 각 중앙행정기관 시·도, 시·도교육청, 정부투자기관
 -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·시행
 - 절약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(조례 및 규정) 정비
 - 소속·산하기관 등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총괄조정 및 감독

4. 대상기관
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(교육시설 포함)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자(자본금의 50% 이상)한 기관
-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출자(자본금의 50% 이상)회사

5. 추진내용

공통부분

가.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

- 각 기관별 「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」 운영의 활성화
 -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
 -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
 - ※ 여러 부처가 입주하고 있는 합동청사의 경우,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
- 에너지절약 담당부서 지정·운영
 -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를 지정·운영(담당부서는 총무과 또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지정)

나.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 설정·관리

- 2000년도 연료·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10%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되, 1차연도('98~2000) 중 5%를 초과한 절감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2차기간(2001~2003) 중 5%를 절감목표로 설정하여 차등 추진(1차기간중 절감실적은 2000년도 하반기 정부합동점검결과에 의거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 결과에 따름)
 - 절감목표 설정시 2000년도 에너지사용량 기준 이외에 기관·소속 건물별 에너지원단위(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) 지표 병행 사용
 - 시설의 신축과 증·개축 및 에너지사용설비의 증가분을 반영한 매년도 절감목표를 기관별로 신축적으로 설정·추진

다.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정비

- 에너지절약관련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정비

라.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·감독

-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조정 및 지도·감독 의무화
 -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점검 의무화
 - 소속·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·평가 및 개선조치
 - 에너지절약관련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

건물부분

가.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 절약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

-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건축물 연면적이 3,000m² 이상인 본청,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추진계획 수립·시행
 - 타당성 검토결과,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기관은 에너지절약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, 사업성이 없는 기관은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단계적 교체
 - 소속건물들의 단위건물규모가 작아 ESCO사업 경제성이 낮은 기관은 여러 소속건물들을 통합하여 종합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

나.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

- 모든 공공건물 신축(중·개축 포함)시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고시)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 의무화

다. 에너지관리진단의 내실화

- 중앙집중방식의 냉·난방을 실시하는 대형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,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에너지관리용역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

-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진단을 신청할 경우, 우선적으로 진단 실시
-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사업 또는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개선 추진

라.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

- 빙축열·가스흡수식 냉방기 설치 또는 지역냉방 도입을 통한 전력절감 도모
-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 등을 통한 전력피크부하 감소
-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냉·난방온도 관리
 - 난방온도 : 18~20℃, 냉방온도 : 26~28℃
- 모든 공공기관의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
 - 컴퓨터, 복사기, 팩시밀리 등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, 「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고시)에 따라,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의무화
-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등 합리적 운행
 - 3층 이하 운행금지(다만, 환자·장애자·화물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)
 -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승강기 제한운행
 - 10층 이상 건물은 일정층 이상·이하로 구분하여 승강기 운행 등

마. 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 도모

- 신축건물에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
 - 신축(중·개축 포함)하는 모든 공공건물의 변기 및

수도꼭지는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로 설치

※수도법 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변기는 '98. 3부터, 수도꼭지 및 샤워기는 2000. 1부터 절수형으로 설치 의무화

- 기존건물에 대한 물 절약 사업 추진
 -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등을 통해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, 노후된 욕내 수도관 교체, 가능한 경우 한번 사용한 물을 처리하여 중수로 재이용 등 물 절약 사업 추진

수송 부문

가. 경차보급 활성화 촉진

-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정비의 지속 추진
 - 통행료 감면범위 확대(고속도로→전국 유료도로) 및 책임·종합보험료 인하 조정 유도
 - 10부제 등 차량운행역제 조치 완화
-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추진
 - 관내 민영주차장에도 경차 지원 권고
- 각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시,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50%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
 -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반영
 - 소속·산하기관에 대해 경차 우선구매 권고

나.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

-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을 강구·

시행

- 부제운행(10부제, 5부제, 주 1회 휴차제 등)
- 승용차 함께 타기 활성화
- 통근버스 확대운영, 인근 기관과 통근버스 카풀제 운영 등 추진
- 부제운행,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승용차 운행자제 기업 및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- 교통유발부담금 경감,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

다.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

-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, 공영주차장 등에 자전거 주차시설 확대 설치
 - 지역 특성에 맞게 검토 추진
- 각급 도로의 신설·확장·재정비시 자전거도로 확보

교육·홍보 부문

가. 각종 교육과정 등에 에너지 분야 포함

- 각종 공무원 교육시 에너지절약관련 교과목의 반영
-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 강화

나. 에너지절약 홍보의 강화

- 각 기관별 홍보·출판물에 에너지절약 내용 포함
- 반상회보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 게재
- 환경·교통 등 정부시책 홍보시 에너지절약내용 연계 추진

6. 행정사항

가. 각 기관별 「에너지절약추진계획」 수립·시행 및 평가

- 각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
 - 다만, 정부 중앙·과천·대전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의 건물부분·승용차운행 자제방안 등은 행정자치부가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, 필요시 입주 기관 총무부서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
-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연도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, 미비점을 개선·보완
 - 매년 반기별로 에너지 소비량 및 절약실적을 자체 점검 및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차기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

나.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(보고)

- 각 중앙행정기관장, 시·도의 장, 시·도교육청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장은 자체,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실적(평가)을 종합하여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(보고)
 - 제출대상기관 : 각 중앙행정기관(가23~가86), 시·도(나01~나18), 시·도교육청(다01~다18),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(마01~마33)
 - ①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연면적 10,000m² 이상인 건물까지의 내용을 취합하여 직접 보고. 다만, 초·중·고교 및 군부대는 보고대상에서 제외

- ②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은 청사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실적·계획을 제외한 기타 사항과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실적·계획을 취합 보고

- 제출시기 : 당해년도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전년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(평가)을 당해년도 1월말까지

- 소속·산하기관 등의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실적(평가)은 위의 제출대상기관의 장이 종합 관리

다.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및 수범 사례 발굴 확산

- 국무조정실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,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
 - 점검대상 :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과 그 소속·산하기관
-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종합평가
 - 평가결과는 「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」에 보고
 - 매년 평가결과와 수범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부

라. 기타

-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국무총리지시 제1999-22호('99. 9. 8)는 폐지
 - 다만, 2000년도 에너지절약추진실적은 국무총리지시 제1999-22호('99. 9. 8)에 의해 2001년도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은 이 지침에 의해 2001년 2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(보고) ☒